

# 행 정 자 치 부

## 주 의 요 구

제 목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정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고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 따르면 근무실적은 제6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減)하여 평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에서는 2015년 상반기·하반기 근무성적 평정계획을 수립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동 계획을 안내하면서(○○○○관-00000, 2015. 0. 00. / ○○○○관-00000, 2015. 00. 0)

평정 단위기간 내 징계처분자 등에 대하여 반드시 직무수행능력 평정서 ‘성실성’란에 평정자가 감점하도록 감점항목 및 배점기준<sup>3)</sup>을 통보하였다.

○○○○원 등에서는 2015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지방○○○○○○의 경우 2015. 7. 2.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구약식 처분에 대하여 2015. 7. 10. 훈계처분을,

○○○○○○소 지방○○○○○○○○의 경우 2015. 10. 30. 검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0.064%)에 따른 구약식 처분에 대하여 2015. 12. 24. 견책처분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시 직무수행능력 평정서상에 감점처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근무성적평정 종합점수가 각각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2015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점수 변경현황

소속	성명	처분관련	당초			변경		
			종합점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성실성)	종합점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성실성)
○○○○원	○○○○ 지방○○○○○○	훈계 2015.7.10.	88.60	47.60	41.00 (5)	88.00	47.60	40.40 (4.4)
○○○○○○소	○○○○ 지방○○○○○○	견책 2015.12.24	100	50.00	50 (5)	99.00	50	49 (4)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 평정을 할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들이 감점처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 시 철저한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점항목 및 배점기준 : 평정단위기간내 견책(경징계 처분자 (1회당 1.0점), 훈계 또는 주의 : 1회당 0.6점